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6. 29.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6월 7일
- 나. 발 의 자: 권영식 의원 외 6명
-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0일
- 라. 상정일자: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1. 6. 2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권영식 의원)

#### 가. 제안이유

-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지급대상(안 제5조)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중복지원 공제 등에 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안건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제정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지원 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주도의 대책과 별개로 구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국민 의견 수렴 및 구의회와의 협의 등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권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
----------	-----

발의년월일: 2021년 6월 일

발의자: 권영식 의원 외 6명

## 1. 제안이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지급대상(안 제5조)

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중복지원 공제 등에 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마.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8조)

## 3. 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1. 6. 7. ~ 6.11.) 결과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

특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